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169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전재수·김정호·김재원

박정하 • 민형배 • 이기헌

허 영·추미애·위성곤

송기헌 · 김성환 · 강유정

이학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연간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등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를 300만원(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0만원)으로 하고, 도서등에

대하여 금액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6,481만원에서 2025년 7,37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로까지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제한도 등 특례를 적용하는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제126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제5호·같은 항 제6호나목·같은 호 다목1) 및 2)·같은 조 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중 "7천만원"을 각각 "8천만원"으로한다.

다. 수영장, 체력단련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체육시설이용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 중 체육시설이용분에 관한 개정부분은 2 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 터 적용한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관하여는 제126 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 과 같음) 략)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8천만원-----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 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 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 0)

가.·나. (생 략) <u><신 설></u>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
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
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수영장, 체력단련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
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
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
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
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4
م حالا
8천만원
<u>8천만원</u>

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 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 0

-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 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이 <u>7천만원</u> 이하 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 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

	_
5.	
	<u>8천만원</u>
6.	
	· 가. (현행과 같음)
	나

연도의 총급여액이 <u>7천만</u> 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 등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 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30

-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 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 액
 -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u>7천만원</u>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 등사용분 + 도서등사용 분) × 100분의 30 + (최 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등사 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40
 -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u>7천만원</u>을 초과 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

<u>8천</u> 만
<u>원</u>
다
1)
<u>8천만원</u>
2)
<u>8천만원</u>

분 × 100분의 15 + 직불 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 카드등사용분) × 100분 의 40

7. (생략)

- ③ ~ ⑨ (생 략)
- ①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 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 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 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 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충급여액이 <u>7천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7.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①
<u>8천</u>
만원
1
<u>8천만원</u>

2. (생략)

2. (현행과 같음)